



응답내용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, 유출될 위험은 없나요?

- 조사된 자료는 **통계법 제33조(비밀의 보호)**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되며 위반시는 통계법 제39조(벌칙)에 의해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.

통 계 법

- ▶ **제33조(비밀의 보호)**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.
- ▶ **제39조(벌칙)**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(제31조 제 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)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.



조사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나요?

- **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확대**
 - 노동시장에서 경력 단절된 여성 등의 경력단절사유, 재취업 특성 및 취업실태의 경향 등을 파악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확대를 위한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됩니다.
- **경력단절 요인 해소와 일·가정 양립 등의 사회적 기반 구축**
 - 경력단절 해소방안 연구로 경력단절 요인해소,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의 개선방안 연구에 활용됩니다.
- **정책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**
 -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정책 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각종 지원사업의 계획수립에 소중히 활용됩니다.



성실한 응답은 나라사랑의 실천입니다.

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

2013. 5.14. ~ 5.28.

조사원 방문 시 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· 조사문의

통계청 통계대행과
☎ 042-481-3815~7
<http://kostat.go.kr/scm>



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란?

-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결혼, 임신, 출산, 양육, 가사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을 대상으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.

조사실시 근거

「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 제7조 ①항
 제 7조(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)
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경력단절이란?

여성이 겪는 **결혼, 임신, 출산, 양육, 가사**로 취업을 중단하였거나 자신의 경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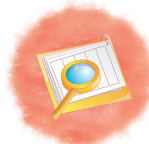


어떻게 조사하나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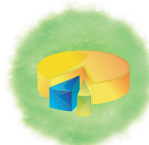
언제 조사하나요?

- 2013. **5.14.** ~ **5.28.** (10일간)



무엇에 대해 조사하나요?

- 만 **25~59세 결혼 또는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**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사유, 재취업 특성, 취업실태 및 취업의사 등을 조사합니다.



어떻게 조사하나요?

- 통계청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**면접을 통해 조사**합니다.
 ※ 방문 시 조사원은 조사원증을 패용합니다.

왜 우리 집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나요?

-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체 대상을 모두 조사하는 것 보다 적정 규모의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.
- 신뢰할 수 있는 조사결과를 구하기 위하여 **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대상을 선정**하게 되며,
- 이러한 절차에 따라 귀 가구가 동 조사를 위해 **전국을 대표**하는 표본 가구로 선정되었습니다.

※ 조사에 협조해 주신 응답자분들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드립니다.

